

환경부 공고 제2009-325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년 10월 21일 / 환 경 부 장 관

#### 1. 개정이유

측정수치 조작을 차단하고 실제 도로 주행상태를 반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과 현행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연계·반영하고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운행자동차의 종류 분류체계 변경(안 제78조 별표21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로 통일 시킴으로 차종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함

나.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방법 개선(안 제78조 별표21제2호 및 별표22 개정)

(1) 운행 휘발유·가스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시 저속공회전모드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저속 공회전모드 및 고속 공회전모드로 개선

(2)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수치 조작이 가능한 무부하급가속 여지반사식 매연측정방법을 '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다. 운행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제78조 별표21 제3호 개정)

(1) 현행 운행 휘발유·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은 '02년 도입 당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대기개선 효과를 위해 현실화

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개선(안 제78조 별표21 제2호 나목 및 별표26 개정)

(1) 현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인 Lug-Down3모드 방법을 KD147모드 방법으로 개선

(2) 운행 휘발유·가스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속도 40km/h로 정속 주행하며 검사하는 정속모드에서 무부하검사시 적용하는 무부하기동 방식+정속모드로 개선

환경부공고 제2009-309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 10월 8일 / 환 경 부 장 관

#### 1. 제안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기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중 경계 및 심각 단계의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조치사항에서 '오염물질 방제조치'를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별표4)

# 환 | 경 | 법 | 규

나. 법 제38조의2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대상을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연평균 방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1) 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대상 기준을 처리용량(시설용량)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35조, 별표 7 및 별표 8)

다.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시 적용하는 자동측정자료의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41조)

라.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사업장별 정액부과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안 제45조)

마.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을 해당 부과기간 이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명확히 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바. 초과배출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에서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안 별표 16)

환경부 공고 제2009-312호

##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2009년 10월 7일 / 환경부장관

###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차량 운행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총 13개 의무 충족 기준을 규정하며 주요 기준으로는 ‘차간 거리 좁히기 상황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일정 공기압 이하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을 것’ 등이 있음

(3)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치의 제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1)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을 정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국립환경과학원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정하여 성능기준 만족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고, 기술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기준 충족시 인증서 교부를 하도록 함

(3) 공회전 제한장치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원활한 인증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